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1월 1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2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사업과장)

#### 가. 제안이유

평창군 읍·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주민 중심의 건강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취약부분을 해결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관련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건강마을 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안 제5조)
- 건강마을 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우리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 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3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민과 평창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지원 노력의 기본원칙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강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안 제9조에서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안 제10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

안 제11조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위원회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주요내용인 “건강위원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으로 읍·면을 단위로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원 주도형을 벗어나 주민참여형 건강증진 사업 운영 전환의 필요에 따라 2016년 평창·대화·용평 건강위원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 읍·면 건강위원회 총2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를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건강마을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건강 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
2. “건강마을 조성 ”이란 마을의 역사적·자연적·사회적·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에서의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건강행태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설치)** 건강마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별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봉사
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신규 포함)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위원 제1항에 따른 구성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건강취약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부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문제의 발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건강마을조성 및 건강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캠페인,보건교육)지원

**제11조(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이 되어있는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한 것으로 본다.